

|          |      |  |
|----------|------|--|
| 의안<br>번호 | 2029 | 【2023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br>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br><b>심사보고서</b>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11. 10.(목)
- 나. 제출자 :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2. 11. 10.(목)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2. 12. 9.(금)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2023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단계별 집행계획
  - 1)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19건(도로 17, 주차장 2)
  - 2) 단계별 집행계획
    - 1단계(3년 이내 시행): 0건
    - 2단계(3년 이후 시행): 19건(도로 17, 주차장 2)

### 다.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하성천)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집행계획은 3년 이내 시행을 1단계, 3년 후에 시행하는 시설을 2단계로 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함.

○ 주요 내용으로는

1)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19건(도로 17, 주차장 2)

2) 단계별 집행계획

· 1단계(3년 이내 시행): 0건)

· 2단계(3년 이후 시행): 19건(도로 17, 주차장 2)

○ 이상과 같이, 본 의견청취 건은 관련법령에 따라 도로, 주차장에 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 건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원안가결

# 큰 거 법 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2012.7.1.] 제85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7.9.19.>
-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4.10.>

③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1.7.1.>

④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권한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25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같은 별표 제10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무는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1· 5, 2014·6·30, 2020. 10. 29.>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9>

③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사무를 처리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 5, 2014·6·30, 2020. 10. 29.>